

식품의약품안전처



수신 관련 협회 및 단체 28개 (경유)

제목 건강진단 비용의 건강보험 적용 안내 협조 요청

- 1. 귀 협회(단체)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- 2. 코로나19 확산 대응을 위해 보건소가 건강진단 업무를 중단함에 따라 민간의료기관을 이용해 건강진단을 받는 식품분야 종사자의 비용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.
- 3. 이에 정부는 건강진단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진단결과서(보건증) 발급에 대해 아래와 같이 한시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귀 협회(단체) 소속 회원사에게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- 가. 적용대상: 「식품위생법」제40조에 따른 영업자 및 종업원, 「학교급식법 시행 규칙」제6조 [별표 4]에 따른 식품취급 및 조리작업자
 - 나. 적용기간: '21.8.2. ~ '22.6.30.

다. 대상 의료기관

- 1) 관할 보건소의 위임*을 받아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업무를 시행하는 의료기관
- 2) 건강진단결과서를 건강보험으로 적용하고자 하는 의료기관**
 - * 관할 보건소의 '건강진단결과서 발급 협조기관'신청에 응한 곳으로 각 기초단체(시군구청) 또는 보건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
 - ** 1) 및 2)의 의료기관은 상급종합병원, 종합병원, 병원, 의원만 해당(치과병원, 한방병원, 요양병원, 정신병원, 치과의원, 한의원, 조산원, 보건의료원은 제외)

라. 본인부담률

구분	의원	병원	종합병원	상급종합병원*
동 지역	30%	40%	50%	60%
읍·면 지역		35%	45%	

* 단, 상급종합병원의 경우, 진찰료는 100%를 적용함. 끝

식품의약품안전처장

주무관사무관식품안전정책 전결 2022.2.8.조은진백남이과장최대원

협조자

시행 식품안전정책과-1157

우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, 행정동 4층 식품안전정책과 / www.mfds.go.kr

전화번호 043-719-2017 팩스번호 043-719-2000 / eunjin1010@korea.kr / 비공개(5)

힘내라 대한민국!

접수